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, 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4. 3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



- 건 명 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
-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4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불능사유	주소
김*순	1959.12.7.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	동 서류를 2024년 3월 22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(이사감)	양양군 (이하생략)

- 공고기간 : 2024. 4. 3 ~ 2024. 4. 17. (15일간)
-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이예진(Tel. 033-630-190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